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08
----------	-------

발의연월일 : 2026. 3. 24.

발 의 자 : 김재섭 · 김기웅 · 김위상
박수민 · 한지아 · 정성국
엄태영 · 유용원 · 주진우
서천호 · 안철수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에서도 정상참작 등을 통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범행의 객체가 1세 미만 영아인 경우, 범행의 주체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 및 학대행위를 지속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하다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그 사회적 충격과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매우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의 경우를 별도의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도 이에 비례하여 상향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

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
2.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3.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살해한 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
2.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3.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u>7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후단 신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u>5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후단 신설></p>	<p>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 ----- ----- ----- -----<u>10년</u>----- -----<u>.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u></p> <p><u>1.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u></p> <p><u>2.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u></p> <p><u>3.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살해한 때</u></p> <p>② ----- ----- ----- ----- -----<u>7년</u>----- -----<u>.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생 략)</p>	<p><u>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p> <p><u>1. 피해아동이 1세 미만의 영아인 때</u></p> <p><u>2.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u> <u>·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u></p> <p><u>3.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그 보호·양육하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u></p> <p>③ (현행과 같음)</p>
--	--